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37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1년 5월 25일
- 회 부 일 : 2021년 5월 31일

2. 제안이유

-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과 일치토록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통합방위회의 개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과 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목적 및 통합방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1) 조례의 근거를 법 및 영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함(안 제1조).
- 2) 영 제8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조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방식 및 실무위원회 소집기준을 정비함(안 제3조제3항, 제8조 및 제10조).

나. 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촉 위원 임기를 명확히 하고, 부의장의 지명방법 및 의장과 부의장의 직무대행을 규정함(안 제3조 제2항 및 제4항, 제5조).

다. 통합방위협의회 및 안보정책자문단의 회의 참석 수당을 신설함(안 제13조).

라. 통합방위회의의 목적·대상·운영에 관한 규정함(안 제14조).

마. 통합방위 지원본부 관련 항목을 통합하고 재정비함.

1) 방위지원본부(현행 제13조) 및 통합방위 종합상황실(현행 제14조)을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으로 통합함(안 제15조).

2)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는 운영부서의 잦은 명칭변경에 따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별표를 삭제함(안 제15조제3항 및 별표 각각 삭제).

바. 조문의 신설 및 통합 등에 따라 조문 순서를 조정함.

1) 조문 신설: 안 제13조(수당 등)

2) 조문 내용 대체: 안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 통합방위회의)

3) 조문 순서 조정

가) 현행 제13조 → 안 제15조(현행 제13조 및 제14조 내용 통합)

나) 현행 제15조 및 제16조 → 안 제16조 및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1. 4. 1.~4. 21.)결과: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통합방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근거 조항을 열거하여 명확히 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회의 소집, 수당 신설,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및 별표 삭제, ‘통합방위회의’의 개최 사항 신설 등 현행 조문을 법령에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은 다년간 수회에 걸친 법령의 개정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사항을 금번 일괄 정비를 통해 현행화 또는 신설 하려는 것으로, 8개의 조항에 16개 상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항목	종전	개정	개정 사유
제1조 (목적)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8조, 제36조	조례의 근거를 법 및 영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
제3조 (구성)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 부시장으로 한다.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시장과 같은 조직의 부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부합되지 않음 * 심의·의결시 불공정 등
	서울지방 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조직명칭 변경(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1.1)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우정청장	<삭 제> <삭 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협의회 구성원에 해당 없음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	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이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제3항제17호에 따라 개인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통합방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항목	종전	개정	개정 사유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의장의 직무 등)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	부의장의 역할을 부여 (신 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제8조(협의회 회의 등)	협의회 회의와 통합방위회의를 구분하기 위함 -협의회 회의 : 안건 심의·의결 -통합방위회의 : 시책평가 및 당해연도 추진업무 발표 등 공감대 형성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준용
		협의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화상회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회의방법 및 심의·의결에 관해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준용 (신 설)
제10조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1회 이상 소집하되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준용
제13조 (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3조제3항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위원 중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위촉 위원에 대한 참석 수당 명문화 (신 설)

항목	종전	개정	개정 사유
		위원 중 지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제14조 (통합방위회의 개최 등)		협의회 의장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회의(이하 “통합방위회의”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조문 신설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협의회 의장 및 위원 2. 자치구청장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선정하는 사람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조문 신설
		협의회 의장은 수도권방위사령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국가정보원의 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회의를 준비한다. 이 경우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조문 신설
제15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서울특별시장 소속 하에 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본부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협의회 의장 소속으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설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2. 경계태세 I급 발령 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8조 및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에 규정에 따라 설치시기 명문화

항목	종전	개정	개정 사유
		3. 화랑훈련,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등 훈련 시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 반대포로 구성하되, 상황실은 지하종합상황실에 분야별 지원반은 각 실·국·본부에 설치 운용한다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며, 종합상황실 소속조직으로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을 구성하고,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각 분야별 지원반을 둔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8조 및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준용

가. 조례 근거 구체화·현행화(안 제1조)

-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근거를 현행 「통합방위법」(이하 “법”)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 내용 및 사유 >

항목	종전	개정사항	개정 사유
제1조 (목적)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8조, 제36조	조례의 근거를 법 및 영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

- 기존의 본 조례 근거 법 조항은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제5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제9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제22조)’이며,
- 본 개정안에서는 ‘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제3조)’, ‘지역협의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제8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제18조)’,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제36조)’ 등 법 시행령의 근거조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다만, 법 시행령 해당 규정이 현재의 조문명으로 개정된 시기를 보면, 제3조는 2009년 11월 7일, 제8조는 2020년 10월 17일, 제18조는 2018년 12월 24일, 제36조는 2018년 8월 21일에 각각 개정되어 현행 조문 체계를 갖추고 있는바, 근거 법령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8조, 제36조----- ----- -.

나.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조정(안 제3조, 제5조)

-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호에서 예시된 구성원으로 일치시키려는 것임.
 - 안 제3조제2항은 협의회 부의장에 대하여 기존 행정1부시장으로 규정된 사항을 의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협의회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제3항제5호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의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1346호, 2020.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서울지방 경찰청”이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안 제3조제4항은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2년 임기에 3회 연임 가능토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제8조제2항) 하면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 할 수 없도록 규정(제8조제3항)한 사항에 맞추려는 것으로 보이며,
- ※ 다만, 의장(서울특별시장)의 임기(4년)를 고려할 때,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3년 임기에 2회 연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안 제5조는 부의장의 의장보좌 역할 및 직무대행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 내용 및 사유 >

항목	종전	개정사항	개정 사유
제3조 (구성)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 부시장으로 한다.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시장과 같은 조직의 부의장은 협의회에 효율적인 운영에 부합되지 않음 * 심의·의결시 불공정 등
	서울지방 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조직명칭 변경(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1.1.1)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우정청장	<삭 제> <삭 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협의회 구성원에 해당 없음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	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이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제3항제17호에 따라 개인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통합방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제5조 (의장의 직무 등)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	부의장의 역할을 부여 (신 설)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의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p> <p>③ 협의회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p> <p>1. ~ 4. (생략)</p> <p>5. <u>서울지방경찰청장</u></p> <p>6. (생략)</p> <p>7. <u>서울지방국세청장</u></p> <p>8. ~ 13. (생략)</p> <p>14. <u>서울지방우정청장</u></p> <p>15. ~ 21. (생략)</p> <p>④ <u>의장, 부의장 및 위원</u>의 임기는 <u>해당 직책 재임기간</u>으로 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② -----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p> <p>③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서울특별시경찰청장</u></p> <p>6. (현행과 같음)</p> <p><삭제></p> <p>8. ~ 13. (현행과 같음)</p> <p><삭제></p> <p>15. ~ 21. (현행과 같음)</p> <p>④ <u>의장 및 위원</u>----- <u>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의장 및 위원</u>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이 퇴직·인사이드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p> <p>2. 제3항제17호에 따라 <u>개인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u></p> <p>2. 제3항제17호에 따라 <u>개인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u></p>

다. 통합방위협의회·실무위원회 소집기준·방법 등(안 제8조, 안 제10조)

- 안 제8조는 협의회(법 제5조)와 법 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른 “통합방위회의”를 구분하여 규정하기 위해 법 조항명 및 내용을 협의회 회의 관련 사항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 안 제10조는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소집에 관련하여 ‘지역실무위원회를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제5항)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통합방위회의의 사항은 안 제14조에 구분하여 개정

< 개정 내용 및 사유 >

항목	종전	개정사항	개정 사유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제8조(협의회 회의 등)	협의회 회의와 통합방위회의를 구분하기 위함 -협의회 회의 : 안건 심의·의결 -통합방위회의 : 시책평가 및 당해연도 추진업무 발표 등 공감대 형성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준용
		협의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화상회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회의방법 및 심의·의결에 관해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준용 (신 설)
제10조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1회 이상 소집하되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준용

< 최근 3년간 연도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실적 >

구 분		운영 실적	회의 결과 / 제도개선 사항					
2019년	1/4분기	2019. 3.15(금)	서울시 맞춤형 위기대응 역량강화 방안					
	2/4분기	2019. 6.21(금)	서울시 주관 적극적인 안보플랜 및 하계 재난시 민관군 협력방안					
	3/4분기	2019. 8.23(금)	6.25 전쟁 상흔 발굴 및 보존사업 추진					
	4/4분기	2019. 10.22(화)	'19년 화랑훈련 보고 및 통합방위 사태선포 절차훈련 실시					
2020년	1/4분기	○ 코로나19사태 대비 통합방위 관련기관(수방사) 총력대응으로 대체						
	2/4분기	구 분	시설방역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역학조사	기 타	
	3/4분기	인력	272명	13,239명	198명	1,834명	1,656명	
	4/4분기	내 용	도로, 역사 등 시설 방역	업무보조	업무보조	운영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 '20. 3. 3 ~ 12.30, 총 17,199명 지원						
2021년	1/4분기	2021. 2. 3(수)	통합방위작전 수행기반 강화 방안 및 국가중요시설 및 핵심기반 시설 방호태세 확립 방안 ※ 제 54차 중앙통합방위회의와 병행실시					
	2/4분기	7월 중 예정	'21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작전계획 심의·의결					

< 최근 3년간 연도별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운영실적 >

구 분		운영 실적	회의 결과 / 제도개선 사항					
2019년	1/4분기	2019. 1.29(화)	서울시 통합방위태세 완비방안 및 향상방안					
	2/4분기	2019. 4. 5(금)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대응방안 추진					
	3/4분기	2019. 7.26(금)	'19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회의 후속조치 보고 및 안건 논의					
	4/4분기	2019. 10.7(월)	'19년 화랑훈련 일정 및 훈련관련 사항 협조					
2020년	1/4분기	○ 코로나19사태 대비 통합방위 관련기관(수방사) 총력대응으로 대체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21년	1/4분기							
	2/4분기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회의 등) ① (생략)</p> <p>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p> <p>③ (생략)</p> <p><신설></p>	<p>제8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협의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화상회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생략)</p> <p>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p>	<p>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p>

라. 통합방위협의회·안보정책자문단 회의 참석 수당 신설(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상위 법령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및 안보정책자문단 위촉직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 내용 및 사유 >

항목	종전	개정사항	개정 사유
제13조 (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위촉위원에 대한 참석 수당 명문화 (신설)

항목	종전	개정사항	개정 사유
		1. 제3조제3항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위원 중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문 위원 중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	

- 다만,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 그동안 수당 등 지급에 대한 근거 없이 지급해오다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근거 없이 수당 등을 지급해 온 비상기획관의 해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회의 참석 등 수당 지급 현황 >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없으며, 당연직 위원 대상 수당 지급 실적 없음.
- 3년간 안보정책자문위원 수당 지급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3,350천원 (17명, 6회)	8,750천원 (17명, 4회)	2,200천원 (17명, 1회)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1. 제3조제3항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u>위원 중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u>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 중 자 <u>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u>

마. 통합방위 지원본부 관련 항목 통합 정비(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법(제9조)과 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통합방위 지원본부’(현행 제13조, ‘방위지원본부’) 및 ‘통합방위 회의’(현행 제14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 명칭 및 구성·운영 사항을 현행 법 과 법 시행령에 맞추어 통합 규정하고,
 -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는 운영부서의 잦은 명칭변경에 따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별표를 삭제(안 제15조제3항 및 별표 각각 삭제)하려는 것임.

< 개정 내용 및 사유 >

항목	종전	개정사항	개정 사유
제13조 (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3조제3항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위원 중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 중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위촉위원에 대한 참석 수당 명문화(신설)
제15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서울특별시시장 소속 하에 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본부장은 행정(1)부시장이	협의회 의장 소속으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설치시기는 다음 각 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8조 및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에 규정에 따라 설치시기 명문화

항목	종전	개정사항	개정 사유
및 운영)	된다.	와 같다. 1.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2. 경계태세 I급 발령 시 3. 화랑훈련,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등 훈련 시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대표로 구성하되, 상황실은 지하종합상황실에 분야별 지원반은 각 실·국·본부에 설치 운용한다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며, 종합상황실 소속조직으로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을 구성하고,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각 분야별 지원반을 둔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8조 및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준용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 하에 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본부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대표로 구성하되, 상황실은 지하종합상황실에 분야별 지원반은 각 실·국·본부에 설치 운용</p>	<p>제15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p> <p>① ----- --- 협의회 의장 소속으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설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p> <p>2. 경계태세 I급 발령 시</p> <p>3. 화랑훈련,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등 훈련 시</p> <p>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며, 종합상황실 소속조직으로 상황실과</p>

현행	개정안
<p>한다.</p> <p>③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p> <p>④ 그 밖에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p>	<p>군·경합동상황실을 구성하고,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각 분야별 지원반을 둔다.</p> <p><삭제></p> <p>④ ----- 지원본부 ----- -----.</p>

바. 조문의 신설 및 통합 등에 따른 조문 조정

- 본 개정조례안은 회의 참석 수당 등의 신설(안 제13조) 등에 따라, 현행 법 및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안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 조문 신설: 안 제13조(수당 등)
 - 조문 내용 현행화 : 안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 통합방위 회의)
 - 조문 순서 조정
 - : 현행 제13조 → 안 제15조(현행 제13조 및 제14조 내용 통합)
 - : 현행 제15조 및 제16조 → 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종합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현행 본 조례 규정 사항을 법령에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 통합방위협의회 등 관련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통일된 법 체계 유지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인바, 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 일례로 현 조례 제13조의 ‘방위지원본부’라는 조직 명칭은 법 제정 (1997.1.13.) 당시부터 ‘통합방위 지원본부’로 규정(법 제9조)된 사항으로, 24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도 본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제도 운영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다수의 명칭 등이 장기간 법령과 불일치하게 규정되어 방치되고 있었는데,
- 이는 그동안 비상사태에 대비한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 또한, 안보정책자문단 위원(2014.12.4. 위촉)에 대한 수당 등을 본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지급해 온 사안은 비상기획관의 법령 준수 의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한 행정집행 행태라고 할 것임.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